

산업통상자원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 허 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8일까지에서 각각 2025년 9월 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12명(6급 1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2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

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급 1명)”을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삭제하며, 서기관 4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7”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를 삭제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삭제한다.

별표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삭제하며, 서기관 4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7”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를 삭제

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1”을 “833”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2”를 “370”으로 한다.

별표 3 서기관 1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0”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를 삭제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6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삭제한다.

별표 5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7 일반직 계 2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8 일반직 계 2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8일"을 "2025년 9월 8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8일"을 "2025년 9월 8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8일"을 "2025년 9월 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명)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u> <u>기관</u> 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또 <u>는 서기관</u> -----.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 담당관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 <u>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u> <u>기관</u> 또는 <u>서기관</u> -----.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 관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u> <u>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서기관</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u>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서기관</u> -----.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생 략)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 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생 략)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
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
다.

③ ~ ⑨ (생 략)

제10조(산업재산정보국) ① (생
략)

②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
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
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
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 ⑨ (생 략)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생
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
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
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
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재산정보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⑪ (생략)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생략)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
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
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 (생략)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 (생
략)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
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
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
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
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
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
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제15조(기계금속심사국) ① (생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
관-----.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계금속심사국) ① (현행

략)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⑩ (생략)

제16조(특허심판원) ① (생략)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부이사관

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
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
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
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
서사무관-----.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특허심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④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⑤ (생략)

⑥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⑦ ~ ⑨ (생략)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생략)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⑤ (현행과 같음)

⑥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물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물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양수산물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물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

----- 10퍼센트-----

② -----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10퍼센트-----

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특허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2명을 말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4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생략)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반도체제조 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

-----.

<삭 제>

제24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u>2023년 9월 8일까지</u> 존속한다. ② ~ 12. (생략)	----- ----- ----- ----- <u>2025년 9월 8일</u>-----. ② ~ 12.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u>2023년 9월 8일까지</u> 존속한다. ②·제3조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5년 9월 8일</u>-----. ②·제3조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u>2023년 9월 8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9월 8일</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4</u>	+14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4</u>	<u><삭 제></u>	-14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7</u>	+37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7</u>	<u><삭 제></u>	-37
<u>서 기 관 · 기 술 서 기 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72</u>	+17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72</u>	<u><삭 제></u>	-172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4</u>	+14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4</u>	<u><삭 제></u>	-14
·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7</u>	+37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7</u>	<u><삭 제></u>	-37
<u>서 기 관 · 기 술 서 기 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72</u>	+17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72</u>	<u><삭 제></u>	-17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821</u> .	<u>833</u> .	+1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382</u> . .	<u>370</u> . .	-1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30</u>	+30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u>30</u> ·	<u><삭 제></u> ·	-30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54</u>	+54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54 	<삭 제> 	-54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 또는</u> <u>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3</u>	+3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u> <u>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u> <u>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u> <u>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u> <u>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u> <u>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u>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u>	<u><삭 제></u>	-3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